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조정할 때에는 매 10년 이전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특별한 사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시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경우로, 소송 종료나 불가능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함. (안 제25조의2)
-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금지 조항을 삭제함 (안 제39조)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함에 있어 전쟁 또는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경우 검토를 연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임.
- 문화재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연기사유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 다만,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도 동산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